
금천구체육회 규정집



금천구체육회 규정

개정 2020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 2020년 3월 16일
개정 2019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 2019년 10월 29일
개정 2018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 2018년 4월 6일
제정 2016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 2016년 5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칭한다) 정관 제5조 및 제35조에 따라 (구)서울특별시체육회의 지회인 (구)금천구체육회와 (구)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원인 (구)금천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8.4.6.>

② 금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칭한다)는 영문명칭을 geumcheon Sports Council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구민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구·시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체육회의 사무소는 금천구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금천구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상위 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선수, 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상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범구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6.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7.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8.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9. 그 밖에 금천구 체육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종목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체육회 산하에 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

② 체육회는 필요시 협력단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목단체란 체육회에서 인정한 종목별 체육동호인의 구 단위 조직을 말하며, 제2항의 협력단체란 체육회 활동에 참가를 희망하여 체육회가 인정한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6조(회비의납부) 체육회 회원인 종목단체는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시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체육회는 시체육회 제7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체육회는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시기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체육회 및 종목단체도 이를 준용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동체육회 및 종목단체가 납부한 회비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6.]

제7조(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권리와 의무)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시체육회 정관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 삭제<2018.4.6.>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종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규정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삭제<2019.10.29.>
3. 60일 이상 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개정 2019.10.29.>
4.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개정 2019.10.29.>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개정 2019.10.29.>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체육회의 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19.10.29.>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시체육회가 구종목단체를 관리단체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6.>
<개정 2019.10.29.>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체육회에 가입조건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4.6.>

② 제5조에 따라 종목단체를 결성 하고자 하는 단체는 1개 클럽 10명이상, 5개 클럽이

총인원 100명이 넘어야 체육회의 회원단체로 가입 할 수 있다.<개정 2018.4.6.>

③ 삭제<2018.4.6.>

④ 체육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개정 2018.4.6.>

⑤ 체육회는 ‘가입·탈퇴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신설 2018.4.6.>

⑥<개정 2018.4.6.>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

⑦ 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가 결정되지 않은 종목이 체육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8.4.6.>

제3장 총회<개정 2019.10.29.>

제11조(총회의구성)<개정 2018.4.6.> ①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4.6.>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장과 동체육회의 장

② 종목단체의 장 또는 동체육회장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7조 제7항에 따라 임원에 선임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개정 2019.10.29.>

⑤ 총회 개최 1일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 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기능) ① 체육회의 총회는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8.4.6.>
2. 회원단체의 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8.4.6.>
5. 삭제<2018.4.6.>
6.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체육회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때<개정 2019.10.29.>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개정 2019.10.29.>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제3호의 요구로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9.10.29.>

⑤<개정 2019.10.29.>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10.29.>

⑥<개정 2019.10.29.>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개정 2019.10.29.>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에는 가부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체육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당 임원은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체육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삭제<2018.4.6.>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신설 2018.4.6.>
- 5.<개정 2018.4.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6.<개정 2018.4.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개정 2018.4.6.>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 8.<개정 2018.4.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개정 2018.4.6.>
9.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8.4.6.>
- 10.<개정 2018.4.6.> 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11.<개정 2018.4.6.>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2.<개정 2018.4.6.> 회원단체 가입승인 및 제명
- 13.<개정 2018.4.6.> 기타 중요사항

③ 삭제<2018.4.6.>

제19조(이사회회의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수석부회장이며, 수석부회장 또한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10.29.>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9.10.29.>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개정 2018.4.6.><개정 2019.10.29.>

제20조(의사및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업무의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를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3조(임원)<개정 2018.4.6.> ① 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하(이중 회장이 지명한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8.4.6.>
 3. 이사 26인 이상 5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개정 2018.4.6.>
 4. 감사 2인
 5. 삭제<2020.3.16.>
- ② 체육회의 임원은 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3조의2(고문) 체육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4.6.]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체육회의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4.6.><개정 2019.10.29.>

② 삭제<2019.10.29.>

③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신설 2019.10.29.>

1.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신설 2019.10.29.>
2. 구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신설 2019.10.29.>
3. 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신설 2019.10.29.>

④ 제3항에 따른 선거인은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의원으로 하며, ‘체육회의 확인을 득한 자’여야 한다.<신설 2019.10.29.>

⑤ 체육회는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10.29.>

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10.29.>

⑦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신설

2019.10.29.>

⑧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9.10.29.>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신설 2019.10.29.>

2.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신설 2019.10.29.>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찬성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신설 2019.10.29.>

⑨ 회장 당선인이 구체육회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인의 효력이 상실된다.<신설 2019.10.29.>

⑩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의 반환조건, 대의원확대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구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10.29.>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체육회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체육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체육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와 중앙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

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구 종목단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 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9.]

제26조<개정 2019.10.29.>(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6.>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6.>

③ 삭제<2018.4.6>

④ 제1항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사고발생일 또는 인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10.29.>

제27조<개정 2019.10.29.>(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6.>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시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8.4.6.>
- ③<개정 2018.4.6.> 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④<개정 2018.4.6.>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1명은 회계 및 세무전문 자격을 갖춘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⑤<개정 2018.4.6.>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 ⑥<개정 2018.4.6.>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개정 2018.4.6.>
- ⑦<개정 2018.4.6.> 체육회의 임원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회장인 경우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4.6.>
- ⑧ 시체육회는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신설 2018.4.6.>

제28조<개정 2019.10.29.>(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체육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종목단체의 임원으로서 체육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⑧ 임원이 체육회(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구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 된다.

제29조<개정 2019.10.29.>(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8.4.6.>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감사 및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8.4.6.>

⑤ 제2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8.4.6.>

⑥<개정 2018.4.6.>삭제<2019.10.29.>

⑦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신설 2019.10.29.>

⑧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신설 2019.10.29.>

⑨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신설 2019.10.29.>

⑩<개정 2018.4.6.><개정 2019.10.29.>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개정 2019.10.29.>(임원의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9.10.29.>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19.10.29.>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19.10.29.>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개정 2019.10.29.>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신

설 2019.10.29.>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19.10.29.>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9.10.29.>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9.10.29.>

③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9.10.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
질 수 없다.<신설 2019.10.29.>

⑤<개정 2019.10.29.> 기타 결격사유는 시체육회 정관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1조<개정 2019.10.29.>(임원의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
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
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 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 된 사람<개정 2018.4.6.><개정
2019.10.29.>

2. 제30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개정 2019.10.29.>

3.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해
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
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
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
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4.6.>

제32조<개정 2019.10.29.>(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구 종목단체 및 동 체육회

제33조<개정 2019.10.29.>(구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의 회원인 구 종목단체는 종목별 동호회(클럽)로 조직한다.

② 구 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개정 2019.10.29.>(구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구종목단체의 임원은 취임승락서, 이력서, 인준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19.10.29.>

② 시종목단체는 30일 내에 임원의 인준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와 불명확한 사유로 인준동의를 거부할 경우 체육회는 인준 동의없이 인준할 수 있다.<신설 2018.4.6.><개정 2019.10.29.>

③<개정 2018.4.6.>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④ 구 종목단체는 제33조에 따라 규약(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 종목단체는 시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신설 2019.10.29.>

제35조<개정 2019.10.29.>(구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는 구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두며, 체육회의 산하에 동체육회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동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동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6조<개정 2019.10.29.>(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총괄 체육기획 위원회, 직능 체육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 의결로 설치한다.

②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9.10.29.>

제37조<개정 2019.10.29.> 삭제<2018.4.6.>

제38조<개정 2019.10.29.>(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동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규정 관리
2. 체육회, 동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3. 동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 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④ 이 밖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6.]

제39조 <개정 2018.4.6.><개정 2019.10.29.>(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4.6.><개정 2019.10.29.>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8.4.6.>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 <개정 2018.4.6.><개정 2019.10.29.>(재산의 구분) ① 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1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재원) 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5. 기타수입금

제42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잉여금의 처리) 체육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재산의 관리) ① 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재산의 대여및사용) 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임직원
2. 체육회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기타 체육회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예산편성 및 결산)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6.>

②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 (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회계감사 등) ① 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체육회는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18.4.6.>

제47조의2<개정 2019.10.29.>(종목단체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동체육회 및 종목단체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체육회 및 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③ 동체육회 및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체육

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체육회는 주무부처장이 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체육회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⑦ 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주무부처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시체육회‘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4.6.]

제9장 사무국

제48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사무국) ① 체육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근직 근무이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단, 시체육회의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29.>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신설 2019.10.29.>

⑤<개정 2019.10.29.>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시 결격사유는 제3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다.<개정 2019.10.29.>

⑥<개정 2019.10.29.>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⑦<개정 2019.10.29.>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9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시체육회의 제규정을 준용하여 체육회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0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해산) ① 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설립허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구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허가(법인에 한한다)를 얻어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1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규정의 변경) ① 체육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4.6.>

② 체육회의 규정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2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규정 제정 및 개정) ① 체육회는 시체육회 「구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의 규정을 제정 및 개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당해 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③ 체육회의 규정 및 제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제53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규정의 해석 등) ① 시체육회의 정관은 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체육회 규정을 시체육회 정관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체육회의 규정과 시체육회 정관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

제54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제한사항) ① 체육회가 시체육회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구체육회가 시체육회 정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개정 2018.4.6.><개정 2019.10.29.>(경영공시) ①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자료, 예산집행현황,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는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체육회는 (구)서울특별시체육회의 지부인 (구)금천구체육회, (구)서울시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금천구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금천구체육회 및 (구)금천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체육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금천구체육회 및 (구)금천구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체육회의 임원의 임기는 체육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④ 체육회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금천구체육회 및 (구)금천구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경기단체와 (구)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4조(직원의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구)금천구체육회와 (구)금천구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체육회의 직원이 된다.

② 체육회 및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구)금천구체육회와 (구)금천구생활체육회의 기존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 칙 [2018.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24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② 회장과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되는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 규정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다만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0.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